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/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서예진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4643호

시행일자 2021. 02. 26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「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**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61호(2021.02.26.)

2. 위와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 :
- 본인일부부담 품목, 비급여 품목,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신설
- 급여중지 해제, 일부 품목 삭제, 일부 품목 제조사 변경

나. 시행일 : 2021.03.01.부터
다만, 별지 3과 별지 5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

붙임 : 1. 복지부 고시 1부.
2. 별지 1부.
3. 변경대비표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